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권유문서

본 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키움증권”(이하 “회사”라 합니다) 간에 작성되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 조 투자일임 서비스의 범위 및 제공방법

(1) 투자일임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투자일임 서비스의 범위

고객이 투자일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일임 및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① 투자일임자산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
- ②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업무
- ③ 매매시기 및 매매가격 등의 결정 및 매매의 이행
- ④ 기타 투자일임과 관련된 부수적인 정보의 제공

(3) 투자일임 서비스의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근거하여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매매방법, 시기 등을 결정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업무 등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지분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 운용과 관련된 종목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자문을 외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받아 이를 기초로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분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에 대해 제 3 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투자일임자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자산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자산에 속한 증권,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법령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범위에 한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 ⑤ 회사는 특정 랩어카운트의 운용상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일임 재산 운용정보 조회를 고객에게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에 따른 고객자산의 운용현황, 투자정보 등 투자일임 서비스 관련정보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제 2 조 투자일임 서비스의 절차

(1) 투자목적 등의 분석, 약관과 계약권유문서의 설명 및 제공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 기간 등을 파악하며, 약관과 계약권유문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공합니다.

(2) 랩어카운트 유형 선정

고객은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고객 상황에 적합한 랩어카운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3) 투자결정 및 계약체결

고객은 선택한 랩어카운트 유형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하며, 계약 관련 주요내용을 기재한 약관 및 계약권유문서를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일임 서비스는 성립됩니다.

(4) 투자일임자산의 운용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와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5)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 파악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이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응답 또는 회신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6) 투자일임 성과보고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의 자산현황과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산변경내역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1 회 이상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 계약기간 및 투자대상

(1) 투자일임의 계약

투자일임 서비스 계약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회사에 위탁한 고객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와 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계약종료 시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조건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현금 또는 보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을 권장기간으로 하며, 고객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20일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3)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가. 고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나.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변경 및 투자일임업무의 위탁 또는 위탁운용을 받은 제3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이 약관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 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합니다. 단,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약관의 별지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납부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합니다.
 - 가.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자산이 운용된 경우
 - 나.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다.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라.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⑤ 상기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수수료 이외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성과와 연동한 보수 등 사전에 정한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합니다.

(4) 투자대상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제 4 조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절차

- (1)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며,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운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투자자산운용사가 의무 및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투자일임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 ①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⑤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 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⑦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 ⑧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⑨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⑩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⑪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⑫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⑬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⑭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⑮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 5 조 고객과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고객의 성향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설문 및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 ②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 ③ 약관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가. 회사는 계약의 주요내용 또는 약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나. 가 목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 회사는 나 목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라. 고객이 다 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투자결과 등의 통지의무
가.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 개월 이내에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의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나.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매 분기(1/4, 2/4, 3/4, 4/4 분기)를 기준으로 하며,

정기적 발송주기는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투자일임보고서의 발송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 및 운용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발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고객의 정보비밀 유지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 3 자에게 위탁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⑤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및 계약해지 요청의 수용 의무

가. 회사는 약관·계약권유문서 및 계약서 등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수용하고, 계약해지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고객의 제한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잦은 제한 사항 요청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운용의 특성상 고객제한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한 후 제한 사항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해지와 관련된 투자일임수수료 및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책임과 의무

① 통지의무

가. 고객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종료의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② 비밀유지 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 업무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③ 투자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투자일임 서비스는 투자일임자산의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일임 서비스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④ 주요 공시관련 법령 준수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47 조 및 제 172 조, 제 173 조에 따라 고객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또는 보유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또는 보유주식 보고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47 조 및 제 172 조, 제 173 조에 해당되는 종목 또는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을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서의 운용금지종목으로 지정하시고, 향후에도 해당 종목이 있을 경우 이를 당사에 통지하여 운용금지종목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제 6 조 투자일임수수료 및 기타 비용

(1) 수수료 산정 및 지급시기

- ① 투자일임수수료는 관계법규의 범위 내에서 약관의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첫 영업일, 계약해지 및 종료일, 계약종료일(계약 재연장일)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되며,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 ③ 제 2 항의 기간까지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응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6 영업일에 처분하며, 당일 시초가에 매도합니다.
- ④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제 2 항의 기한 후에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는 경우 약관의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회사가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가입고객과 협의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 ① 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이외에 매매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 등과 연계된 성과보수,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성과보수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합니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에 연동하여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 ③ 투자일임수수료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법에 의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 및 기타 수수료는 고객의 계좌에서 투자일임수수료와 별도로 인출됩니다.

- ④ 기타비용, 세금 등 : 증권 매매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기타 증권 매매와 관련된 기타 비용, 수익증권 등의 다른 수익자 또는 주주와 동일하게 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운용 및 판매보수 등
- ⑤ 성과보수는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기준지표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중도출금 시에는 기간 중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며, 성과보수 산정기준 및 시점이 재설정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과 개별합의에 의하여 고객이 정한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 성과보수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회사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7 조 투자일임자산의 인출

(1) 회사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투자일임계좌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며, 보유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2)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증권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투자일임자산의 평가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또는 회사에 조회 요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투자일임 서비스를 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 (1) 고객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에 대해 투자일임 서비스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별로 다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기준 및 고객이 일임계약 체결 시 회사와 합의한 운용조건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위탁한 자산에 대해 고객의 명의로 투자일임을 수행합니다.
- (3) 회사에서 투자일임 서비스를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은 [첨부 1. 투자일임 운용역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투자일임 운용역에 관한 사항]

성명	민석주	전화번호	02-3787-4961
직위	이사	운용시작일	2011/05/16
자격증 취득현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경력	('18.05~현재) 키움증권 금융상품팀 ('16.01~'18.04) 키움증권 투자솔루션팀 ('15.01~'15.12) 키움증권 법인금융상품팀 ('07.08~'14.12) 키움증권 금융상품팀 ('05.07~'07.07) 동부증권 고객자산관리팀		
징계내역	없음		

성명	조병희	전화번호	02-3787-5129
직위	부장	운용시작일	2023/03/09
자격증 취득현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경력	('18.04~현재) 키움증권 랩솔루션팀 ('07.01~'18.04)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		
징계내역	없음		

성명	권규백	전화번호	02-3787-9832
직위	차장	운용시작일	2021/10/25
자격증 취득현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경력	('21.10~현재) 키움증권 랩솔루션팀 ('19.07~'21.10) 동양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 ('18.08~'19.07) 현대인베스트먼트 채권운용 2 팀 ('15.05~'18.08) 메리츠자산운용 Fixed Income 팀		
징계내역	없음		

성명	배진영	전화번호	02-3787-4916
직위	대리	운용시작일	2023/01/02
자격증 취득현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경력	('23.01~현재) 키움증권 랩솔루션팀		

	('11.12~'22.12) 키움증권 CS 운영 3 팀		
징계내역	없음		

성명	한정현	전화번호	02-3787-9872
직위	주임	운용시작일	2023/01/02
자격증 취득현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경력	('23.01~현재) 키움증권 랩솔루션팀 ('22.01~'22.12) 키움증권 FX 팀		
징계내역	없음		

성명	손현빈	전화번호	02-3787-4810
직위	과장	운용시작일	2019/01/17
자격증 취득현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경력	('22.02~현재) 키움증권 금융상품팀 ('21.05~'22.01) 키움증권 RA 운용팀 ('20.04~'20.05) 키움증권 금융상품팀 ('19.01~'20.03) 키움증권 랩솔루션팀 ('17.01~'18.12) 키움증권 신탁팀 ('14.03~'16.12) 키움증권 커뮤니케이션팀 ('11.09~'14.02) 키움증권 온라인투자자문팀/투자컨텐츠팀		
징계내역	없음		

성명	노수원	전화번호	02-3787-4846
직위	대리	운용시작일	2017/01/16
자격증 취득현황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경력	('20.04~현재) 키움증권 금융상품팀 ('19.01~'20.03) 키움증권 랩솔루션팀 ('16.09~'16.12) 키움증권 신탁팀 ('13.11~'16.08)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		
징계내역	없음		

[첨부 2. 기타 유의 사항]

구분	내용
청약 철회권	<p>고객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일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p>
위법계약 해지권	<p>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p> <p>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 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합니다.</p>
자료 열람 요구권	<p>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제출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회사는 법령,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분쟁 조정	<p>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woom.com) 또는 고객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p>

〈별표 1〉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위규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받은 과거의 징계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관리 직원의 적합성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징계내역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열람신청인 및 열람대상자

- 금융투자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직원”의 과거 징계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신청절차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거래 금융투자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사 인사부 또는 영업추진부(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준법감시부서) 등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징계내역 통보

- 징계내역은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보되며, 해당 직원이 징계내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6 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보대상 징계내역 및 통보내용

- 금융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견책”이상의 징계내역 및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 통보대상 제외

- 견책이상의 징계라 하더라도 해당 징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위법·부당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감독소홀·단순추종 등으로 부과된 징계
- ▶ 감독당국이 사면 등의 취지에 따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 징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 징계면직 : 10년, 정직 : 5년, 감봉 및 견책 : 3년